

초상권, 당사자 동의 여부 꼭 확인해야



박 혜 진
부산 경남사무소장

모 케이블방송사는 지역 영세 상인의 번영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에게 보다 좋은 음식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지역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해오고 있었다. 담당 PD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파는 ‘착한’ 지역의 맛집을 선정해서 방송했다.

방송사는 특별히, 여름 기획으로 ‘팔빙수’ 편을 제작하기로 정하고, 재래시장에서 정직하게 전통적인 팔빙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를 섭외했다. 촬영 당일, 마침 젊은 여성 세 명이 팔빙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하여 팔빙수 제조방법 등과 함께 팔빙수 편의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팔빙수 편은 방송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세 명의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초상권이 문제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방송사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팔빙수를 먹는 모습을 촬영 보도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팔빙수는 찍을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얼굴이 보도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빙수를 촬영하는 중간에도 자신들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이 아닌지 재차 확인했으며, 방송사측으로부터 팔빙수만 찍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추후 자신들의 모습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방송사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방송 태도를 비난했다.

게다가 신청인 중 한명은 얼굴이 방송됨으로 인해 알리고 싶지 않은 성형수술 사실이 공개돼 주위로부터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며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리 전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촬영을 거부했었다고 쿨하게 인정했다. 먹거리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먹는 장면을 살리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피신청인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촬영을 거부하거나 촬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자신들의 모습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 즐거운 추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피신청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우려와는 달리 피신청인은 필자와 여러 번 통화하면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등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조정 당일에도 동의 없이 신청인들의 초상을 촬영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한 다양한 조정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초상 공개로 인한 피해와 방송사측의 안이한 태도를 거듭 지적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담당 중재부는 기존 조정 사례를 참고하고, 피신청인의 매체 영향력과 방송 노출시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제시하였고, 당사자들이 중재부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피신청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동안의 보도 관행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신청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신청인이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조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노력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사소한 분쟁조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라며, 지역방송사로서 지역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주길 기대해본다.

